

#4. 2023 년 세법 개정 사항 분석 (1)

안녕하세요, 김지호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법은 통상적으로 매년 7월경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의와 수정을 거쳐 통과되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긴 논의를 거쳐 12월 말에 간신히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2023년 세법 개정 사항 중 스타트업이 알고 있으면 좋은 개정 사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금액 2 억원으로 상향

스타트업의 성과보상 및 인력유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은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미리 약정하고 근로자 등에게 부여되며, 회사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면 행사하는 때 낮은 행사가격과 상승한 회사의 가치의 차액만큼 가치상승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소득세법에서는 그러한 가치상승 이익에 대해서 근로소득(퇴직한 이후 행사하게 된다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2 규정에 따르면 벤처기업으로 등록한 회사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가치상승 이익에 대해서 일정금액만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 16조의 2 규정에서와 같이 2022 년까지는 5천만원까지 행사이익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행사분부터는 2억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전규정	개정규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
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3에서 "벤처	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 3에서 "벤처
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31일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	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
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	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



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6조의 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아니한다. (2021. 12. 28.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24.신설) 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부터 제16조의 4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라 한다)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2. 12. 31. 개정)

② 제1항이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 2 또는 제542조의 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정한다. (2022. 12. 31. 신설)

③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특례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2.12.31. 항번개정)

또한, 과도한 비과세금액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 한도금액을 5 억원으로 설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서 5 억원 한도의 범위는 2022 년 7 월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누적한도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기획재정부의 입법취지는 '회사별 비과세금액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연간 5 억원'이 아니라 '개인별로 특정회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누적적으로 5억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9)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3)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이 비과세 한도 상향: 연간 5천만원 → 2억원
<신 설>	- 누적한도*: 5 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ㅇ (좌 동)
<추 가>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출처:2022년 세재개편안 상세안 기획재정부,20222-07-22



이번 세법 개정 중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16 조의 2 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151)'과 국회에서 수정하여 통과시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비교해 보면 별다른 국회의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A 씨가 2023 년 이후부터 벤처회사 B 에서 부여받은 총 6 억 원 가치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최대한 비과세로 적용받고 싶다면, 2023 년에 2 억원, 2024 년에 2 억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비과세를 적용 받은 후 2025년에는 남은 비과세 누계 한도인 1억 원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A씨가 <mark>6억 원</mark> 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비교세로 받는 방법은?		
2023년	5천만 원	
2024년	5천만 원	
2025년	5천만 원	
2026년	5천만 원	
2027년	5천만 원	
2028년	5천만 원	
2029년	5천만 원	
2030년	5천만 원	
2031년	5천만 원	
2032년	5천만 원	
2033년	5천만 원	
2034년	5천만 원	

(개정 후) A씨가 <mark>6억 원</mark> 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mark>비과세</mark> 로 받는 방법은?	
2023년	2억 원
2024년	2억 원
2025년	1억 원
2026년	1억 원(과세 대상)
비과세 누적 한도	최대 누계 5억 원까지

본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세움 택스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3SEUMTax

김지호 세무사

CTA

jeeho.kim@seumlaw.com